**구매거래 기본계약서**

**- Turn-key계약용 -**

경기도 평택시 진위산단로 75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주) 원익아이피에스 (이하 ‘갑’이라 칭함)와 (주)나인테크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주)나인테크 (이하 ‘을’이라 칭함)은 2016년 8월 5일 (“계약발효일”)부로 상호 간에 합의한 물품의 설계, 제작, 평가 및 공급과 관련한 내용에 관해 다음과 같이 구매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며, 상호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합의한 제작 규격(개별계약1)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설계, 제작, 평가 및 공급함에 있어 그 제반 사항에 관한 ‘갑’과 ‘을’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목적물”이란 본 계약의 주된 목적으로써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제작 및 공급하기로 한 물건 등을 말한다.
2. “제작 규격”이란 계약목적물을 제작함에 있어 ‘갑’의 수요에 따라 ‘갑’이 정한 계약 목적물의 재료, 크기(사이즈), 제작 방식 등을 말한다.
3. “목적물의 인도”란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를 ‘을’에서 ‘갑’으로 이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본 계약의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제작 규격의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4. “개별계약서”란 계약목적물의 구체적인 제작 규격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갑’ 소정의 양식에 의한 납품통지서 또는 개별납품 의뢰 문서(발주서, 거래 명세서 등)를 말한다.

**제3조 (기본계약)**

1. 본 계약은 ‘갑’과 ‘을’ 간의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별도의 서면 계약이 없는 한 ‘갑’과 ‘을’ 간의 물품의 제작 및 공급에 관한 모든 거래는 본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2. ‘갑’과 ‘을’ 간의 거래에 있어서 개별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도 개별계약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거래상의 기본적인 사항은 본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3. ‘갑’과 ‘을’ 간의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중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당사자들은 본 계약상 규정된 거래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4조 (개별계약의 성립)**

본 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갑’과 '을' 간의 개별계약은 ‘갑’이 발급하는 ‘갑’ 소정 양식의 납품통지서 또는 개별 납품 의뢰 문서 등이 ‘을’이 계약목적물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을’에게 도달하여 ‘을’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며, 해당 문서에 ‘갑’과 ‘을’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승낙을 거부할 때에는 ‘갑’의 납품통지서 또는 개별 납품의뢰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익일 영업일 이내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계약의 내용)**

‘갑’과 ‘을’은 개별계약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규정하고 준수한다.

1. 계약목적물
2. 총 계약 금액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3. 계약 목적물 인도일(계약 납기)
4. 납품 장소
5. 하자 보증 기간
6. 계약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7. 기타 조건

**제6조 (대금지급 방식)**

‘갑’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을 ()의 조건으로 ‘을’에게 지불한다. 단, 본 계약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업체등록 및 출입)**

‘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갑’ 소정의 협력업체 등록절차에 따라 업체 실태조사서(‘갑’ 소정의 양식에 의함), 사업자등록증,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함으로써 업체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추후 위 등록 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을’은 해당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문서로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갑’은 ‘을’의 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 이외 사용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8조 (견본품 제출)**

1. ‘을’은 각 개별계약 시 인도에 앞서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갑’에게 견본품, 견본품성적서, 보증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갑’으로부터 품질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위와 같은 품질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견본품 이외의 계약목적물의 제작 및 공급에 착수할 수 있다.
2. 견본품 제작비용의 부담, 견본이 불합격한 경우의 처리방안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제작 절차)**

1. ‘을’은 ‘갑’이 제시한 제작 규격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제작한다. 단, ‘을’은 ‘갑’이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시 본 제작 규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할 수 있다.
2. ‘을’은 계약목적물 제작에 소요되는 자재를 제작 규격에 만족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설계 또는 제작사양 등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규격을 만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3. 본 계약목적물의 구체적인 제작 규격은 개별계약으로 체결한다.

**제10조 (보증의무)**

1. ‘을’은 위탁 받은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설계, 제조, 평가에서부터 고객사 납품 및 고객사 FAT 후 1년까지 후까지 ‘갑’이 요구하는 사양, 품질 및 신뢰성 만족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 보증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요구하는 품질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품질계획의 수립, 측정체계유지, 운영, 통계적 공정관리, 검사 및 시험결과의 보관, 품질문제 개선대책 수립 및 현장 FEED BACK 등 품질보증 활동을 하여야 한다.
3. ‘을’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 못해 ‘갑’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품질적 악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갑’은 이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해 ‘갑’이 취하는 모든 적법한 제재조치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르는 것으로 한다.
4. ‘을’이 공급하는 계약목적물은 사용금지 부품, 유해물질 등 유해자재에 관한 법규 및 안전규제사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을’은 제품생산 및 설계 등과 관련한 최신 법규 및 규격 기준과 기술정보를 입수하여 수시로 제품의 안전기준을 재검토하고 이에 관련한 사항을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정변경의 사전신고 및 승인)**

‘을’은 ‘갑’의 계약목적물을 제조함에 있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공정, 제조설비, 사용재료, 시험규격 및 기준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갑’에게 서면 통보하여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적용해야 한다. 단, 사전승인을 받지 못하고 발생한 제반 문제는 전적으로 ‘을’이 책임진다.

**제12조 (품질손실 비용의 보상)**

‘을’이 ‘갑’에게 납품한 부품의 품질문제로 인해 ‘갑’의 공정, 품질 및 제품 책임에 문제를 야기시킨 경우 ‘을’은 ‘갑’에게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3조 (제조물책임)**

1. ‘을’은 ‘갑’이 발주한 계약목적물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갑’에게 납품 하여야 한다.
2. ‘을’이 납품한 물품 등에 대하여 ‘갑’또는 ‘갑’의 고객사에게 제3자로부터 제조물책임에 대한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을’은 자기의 비용으로 동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으로부터 ‘갑’또는 ‘갑’의 고객사를 방어하여야 한다.
3. ‘갑’또는 ‘갑’의 고객사는 자기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책임으로 인하여 위 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배상을 한 경우에는 ‘을’은 동 배상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갑’과 ‘을’은 제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의 발생 방지·방어 및 대책 수립에 상호 적극 협조한다.
5.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납기)**

1. 납기 결정

‘갑’은 각 개별계약 체결 시 자신의 고유한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임의로 계약 목적물의 납기를 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을’은 정당한 사유로 당해 개별계약서상의 납기를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 당해 개별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익일 영업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새로운 납기를 결정할 수 있다. 만일 ‘을’이 당해 개별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의 익일 영업일 이내에 ‘을’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갑’에게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을’은 위 납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납기 통지

‘갑’은 세부적 납기가 기재된 납품통지서 또는 납품의뢰 문서를 ‘을’에게 교부함으로써 발주서상의 납기 기재를 대신할 수 있다.

1. 납기 회신

‘을’은 발주서를 교부 받은 날의 익일 영업일 이내에 해당 물품의 재고 유무 점검 또는 생산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납품이 가능한 날을 판단하여 ‘갑’의 SCM 사이트에 로그인 후 납품예정일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후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매주 1회 납품 예정일을 등록하여야 하며, 납품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마다 즉시 수정된 납품예정일을 추가 등록하여야 한다. SCM 사이트 주소 및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갑’으로부터 제공 받는다. 단, ‘갑’이 SCM 주소 및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을’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조 ①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납품 지원

‘갑’은 ‘을’의 납품에 있어 가격, 품질, 납기준수 및 기타 협력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을’의 계속적인 납품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한다.

**제15조 (단가조정)**

‘을’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급사업자인 경우,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단가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부품의 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원재료 (화학적, 물리적 변화를 거쳐 제품이 되는 기본소재를 말한다) 가격이 15% 이상 변동되어 단가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을’은 ‘갑’에게 단가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가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신청을 받은 당사자는 위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단가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4.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위 신청을 받은 당사자가 단가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단가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2차 VENDOR에 대한 대금지급)**

1. ‘을’은 ‘갑’의 계약목적물 가공, 조립 등을 위해 ‘을’의 수급사업자(이하 ‘2차 VENDOR’라 칭함)로부터 ‘갑’의 계약목적물 일부를 제조 위탁할 경우 ‘을’은 정기적으로 2차 VENDOR에 대한 제반 현황을 관리 해야 하며 ‘갑’이 요청할 경우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2차 VENDOR에게 본 계약목적물의 일부를 제조 위탁할 경우에는 본 계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을’은 전 항의 2차 VENDOR가 중소기업인 경우 납품된 물품대금의 지급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정한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그에 준하여 지급해야 한다.

**제17조 (부당반품의 금지)**

1. ‘갑’은 ‘을’로부터 계약 목적물을 납품 받은 때에는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3. 경제상황의 변동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4.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5. ‘갑’이 공급한 사급재 또는 설비·계측기 등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6. ‘갑’의 사급재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제18조 (제3자의 손해)**

1. ‘을’은 그가 제조, 가공, 수리한 계약목적물과 관련하여 제3자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손해를 입었거나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을’은 자기 책임과 비용 부담 하에 그 일체를 처리, 해결해야 한다.
2. 계약목적물에 대한 ‘을’의 귀책사유로 사외 CLAIM 및 서비스 CLAIM이 있는 경우 이들 CLAIM의 해결을 위한 일체의 비용과 책임은 ‘을’이 부담해야 한다.

**제19조 (인도)**

1. 인도 절차 및 완료

‘을’은 ‘갑’ 소정의 인도 절차에 따라 개별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목적물을 납품하여야 한다. ‘갑’은 ‘을’의 인도 즉시 수량, 품목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하며, 당해 확인 절차 종료 후 ‘을’은 ‘갑’으로부터 소정의 인도 확인 서류를 교부 받아야 한다. 본 서류를 교부 받음으로써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 인도 장소

‘을’은 개별계약서에 기재된 인도 장소에 납품 하여야 하며, 인도 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및 기타 제반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이는 ‘갑’의 긴급 요청에 따른 인도 시에도 동일하나 긴급 요청으로 인하여 추가된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20조 (검수)**

1.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계약 만료 이전에 계약목적물의 검수 예정일을 결정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의 검수 요청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2.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검수를 실시하되, 검수 또는 재검수를 위해 필요한 일체의 제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3. ‘갑’은 필요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제작 규격에 관한 중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갑’은 검수 시, 본 계약내용대로 제작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최종 검수에 합격하면 ‘갑’은 검수확인서를 ‘을’에게 교부한다.
5. ‘을’은 전항의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대체 또는 보수하여 다시 검수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을’은 ‘갑’에게 납품지연에 따른 책임감면을 주장하지 못한다.
6. ‘을’은 ‘갑’의 검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에 대하여 재검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수의 요청이 있을 시, ‘갑’은 지체 없이 재검수를 실시한다. 단, 동 이의제기를 이유로 계약 기간을 연장 할 수는 없다.

**제21조 (불합격품의 처리)**

1. ‘갑’의 검수결과 불합격품에 대하여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의 비용 부담으로 즉시 인수하고, ‘갑’이 요구하는 지정 납기일까지 이의 대체품을 납품하거나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을’은 본래의 납기에 대한 지연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을’은 검수결과 불합격된 계약목적물을 ‘갑’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인수하여야 한다. ‘을’이 이에 위반한 경우 ‘갑’은 이 불합격품을 ‘을’에게 반송 할 수 있으며, 반송에 필요한 일체의 책임과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3. ‘갑’이 불합격품을 보관하는 동안 ‘갑’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불합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 또는 변질한 경우 그 손실은 ‘을’이 부담한다.

**제22조 (부족수량 및 불량물품의 납입과 과다납품의 처리)**

1. ‘을’은 검수결과 수량부족 또는 하자로 인한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부족수량을 보충하거나 하자 있는 불합격품의 대체품을 ‘갑’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단, ‘갑’의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2. ‘갑’은 제조 위탁물품의 과다납품의 처리에 관해서는 제15조 불합격품의 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키로 한다.

**제23조 (서비스 자재의 공급)**

1. ‘을’은 ‘갑’의 서비스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자재에 대해 정부가 정한 법적 의무 공급기간까지 서비스 자재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비스 자재의 단가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을’이 공급한 자재 중에서 정부가 정한 제품 무상 보증 기간 이내에 불량을 유발시킨 경우 ‘을’은 ‘갑’에게 즉시 보상(물품교체, 현금 등)해야 한다.
3. ‘을’이 서비스 자재의 공급을 지연시키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소유권)**

1. ‘갑’이 ‘을’에게 제공한 지급품 또는 대여품과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근거로 제조 가공된 사양품, 또는 기타 물건의 소유권은 ‘을’이 지급품 또는 대여품 대금의 지불을 완료할 때까지 ‘갑’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2. ‘을’은 지급품 및 대여품에 대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의 체납처분이나 기타 일반 채권자로부터 강제 집행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품 및 대여품이 ‘갑’의 소유임을 밝히거나 이를 증명할 표지 등을 부착하여 해당 강제집행 등의 목적물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위의 사실 및 경위를 즉시 ‘갑’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품 또는 대여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원인이 ‘갑’에게 있거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시키거나 대체품을 제공하는 등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 (지급품 및 대여품의 취급)**

1. ‘을’은 지급품 또는 대여품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갑’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소정의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할 수 없다.
2. ‘을’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3. 대여품 또는 무상지급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4. 특별히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
5. 대여기간이 완료된 경우
6.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26조 (계약목적물의 표기 및 포장)**

‘을’은 ‘갑’에게 인도하는 계약목적물의 표기 및 포장 상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한다.

1. 계약목적물의 포장상태는 ‘갑’이 요구하는 소정의 용기 및 용량에 따른다.
2. 계약목적물의 포장 표면에는 물품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등을 표시하거나 또는 동 사항이 명기된 표찰을 별도 인쇄하여 부착한다.
3. ‘갑’은 상기 1,2호에 따르지 않은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납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7조 (실사 및 지도)**

‘갑’은 계약목적물의 품질 및 공정 관리 등을 위하여 ‘을’의 공정설비, 생산관리, 품질 보증 및 재무상태 등 실태를 수시 조사할 수 있고, 작업 현장에 출장하여 이를 확인하고 검사할 수 있으며, 이들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 (업체 평가)**

1. ‘갑’은 ‘을’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 정부 및 유관 기관에서 실시하는 업체 평가제도 혹은 ‘갑’의 소정 평가 기준에 의해 ‘을’을 평가하여 등급을 매길 수 있다.
2. ‘갑’은 위 평가등급에 따라 합리적인 조치로서 개발발주, 납품발주 및 부품대금지급 등에서 ‘을’에 대해 우대 조치 혹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 (계약 이행 보증 및 하자보증)**

1. ‘을’은 본 계약의 이행 보증을 위하여 계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단, ‘갑’이 ‘을’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을’은 선급금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증서를 ‘갑’에게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은 계약목적물을 ‘갑’이 자신의 고객에게 납품하여 최종 승인(Final Acceptance Test)를 받는 날로부터 12개월 간 (이하 ‘하자보증기간’이라 한다.)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추가 대금 없이 하자보증을 한다.
3. 하자보증기간 중 본 계약목적물의 정상적인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을’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단, 합리적 수준의 기능 추가 및 개선의 경우 추후 협의를 통하여 지원한다.
4.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을’이 지정하지 않은 사람이 계약목적물의 개조, 변경 등을 행한 결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되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5. 하자보증기간 경과 이후의 계약목적물의 유지, 보수에 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을’은 하자보증 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기간 만료 시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총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자보증 증권을 ‘갑’에게 교부한다.

**제30조 (계약의 변경)**

1.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일시 중지해야 할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청해야 하며, ‘갑’과 ‘을’은 협의를 통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일시 중지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혹은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 기간 내에 제작을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갑’과 ‘을’은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을’은 계약목적물의 사양변경,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협의 요청하여야 하며, ‘갑’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사양변경, 임의 설계 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 등 ‘갑’의 일체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제31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손해배상책임)**

1. ‘갑’과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위반당사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의 이행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동 최고기간 내에 상대방이 위반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 ‘갑’은 ‘을’에게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을’이 ‘갑’에게 중대한 손해나 위해를 끼친 경우
4.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5. ‘을’이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기타 강제집행을 당하여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7. 재해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8.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유책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2조 (지체 보상금)**

1.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계약 납기를 지연하였을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하여 1일당 계약 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보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갑’은 동 지체 보상금을 대금지급 시 공제할 수 있다. 단, 지체 보상금의 총액은 총 계약금액의 10%를 넘을 수 없다.
2.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계약 납기를 지연하였을 경우, 전항의 지체 보상금 외에 별도로 ‘갑’에게 발생한 일체의 영업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당해 납기지연으로 인하여 ‘갑’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납기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갑’의 책임으로 제작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제작이 중단된 경우

3. 기타‘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지연된 경우

**제33조 (비밀 유지 및 판매금지)**

1.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 체결 사실 및 상대방의 모든 정보(경영, 기술, 자료, 지식, KNOW-HOW 등)를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비밀 정보를 계약이행의 목적 이외에 이용할 수 없으며 제 3자에게 열람 또는 누설하여서도 안 된다.
2. ‘을’이 ‘갑’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제작 규격에 따른 제작, 공급하기로 한 계약목적물의 경우,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임의로 이를 제3자에게 제작, 공급 및 판매할 수 없다.
3. 본 조항은 각 당사자의 종업원, 퇴직자 및 하도급업자에게도 적용되며 본 조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되는 상대방의 모든 손해를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4. 계약 만료, 계약의 해지(해제) 또는 일방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시 그 일방 당사자가 제공한 모든 기술정보와 그 복사물, 생산물 일체를 지체 없이 일방 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갑’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갑’의 자료를 이용한 제품이나 반제품 등을 제3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하며, ‘갑’의 서면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갑’에게 공급하는 공급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없으며, ‘갑’과 ‘을’ 사이의 공급단가에 대한 정보를 어떠한 형식을 통하여서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6. 본 규정, 비밀 유지 의무는 계약의 종료 또는 만료 시점 이후에도 3년간 지속한다.
7. ‘을’이 본 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위약벌으로 금 5억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외에 ‘갑’이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3조 (지적재산권)**

1. ‘을’은 계약목적물이 제3자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2. ‘갑’또는 ‘갑’의 고객사가 계약목적물 사용과 관련한 행위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당해 제3자가 소송 및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갑’은 즉시 이를 ‘을’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고 ‘을’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며, 동 소송 또는 분쟁으로 ‘갑’또는 ‘갑’의 고객사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에 의해 ‘을’이 ‘갑’에게 공급한 계약목적물과 계약 이행 시 산출되는 프로그램과 그 노하우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및 판권 포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은 원칙적으로 ‘갑’의 소유로 하되, ‘을’이 ‘갑’의 도면, 사양서, 원천기술이 아닌 ‘을’ 자신의 기술로 제조한 목적물이거나 그러한 제작방법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한이‘을’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이 공동으로 제작 및 개발하여 완성한 계약목적물이거나 그 기술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지적재산권의 권리는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한다. 이 경우 그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제반 비용은 ‘갑’과 ‘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4. 제3항 단서에 의해 공동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는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공동 출원에 대한 권한 내지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 및 기술, 제작방법 등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4조 (양도 금지)**

1.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 증여, 대물변제, 대여하거나 담보로서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할 수 없다.
2. ‘갑’에게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 권리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계약목적물에 대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을’은 제3자와 연대하여 보증한다.

**제35조 (불가항력)**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 체결 후 관련 법령의 개폐, 천재지변, 화재, 폭발, 전쟁, 정부의 조치, 국제 분쟁 기타 그 통제 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당사자는 동 불가항력 사유가 지속되는 한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36조 (부정방지의 의무)**

1. ‘갑’과 ‘을’은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의 이익만을 위하여 불건전한 상거래 행위(금전수수, 리베이트, 커미션수수 등)또는 통상적인 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갑’과 ‘을’의 종업원 중에서 공정한 거래관계 유지에 역행되는 행위를 한 자는 ‘갑’과 ‘을’ 어느 쪽에서도 고용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갑’과 ‘을’은 상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37조 (계약의 일부 무효)**

본 계약의 내용의 일부가 관계 법령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계약내용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38조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한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2.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의 합의관할 법원을 ‘갑’의 관할 지역 법원으로 한다.

**제39조 (계약의 연장)**

본 계약서의 계약 기간은 본 계약서 제5조 3호의 규정에 따르며,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의 서면에 의한 계약갱신거절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금액 등 ‘갑’이 변경을 희망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  |
| --- | --- |
| 계약자(갑) : 주식회사 원익 아이피에스 | 계약자(을):(주)나인테크 |
| 주소: 경기도 평택시 진위산단로 75 | 주소: (주)나인테크 |
| 대표자: 변 정 우 | 대표자: 박근노 |
| 날짜: 2016년 8월 5일 | 날짜: 2016년 8월 5일 |